



국토교통부

## 국 토 교 통 부

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

(경유)

제목 당첨자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 가능여부 질의(인천검단 AA21)  
회신

1.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-369(2024. 1. 24.)호의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.

- (질의요지) 주거동 철근 누락단지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단지와 같이 계약해제 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한지?
  - 당첨자 명단 삭제가 가능하다면 무주택기간 인정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등의 부활도 가능한지?
- (검토의견) 분양주택의 하자 등 사업주체 귀책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입주금을 반환한 경우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14조제1호에 따라 당첨자 명단 삭제 등이 가능하며, 당첨자 명단이 삭제될 경우 주택소유 이력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없는 것으로 간주됨. 끝.

국 토 교 통 부 장



주무관

황병철

행정사무관

지현근

주택기금과장

전성배

02/01

협조자

시행 주택기금과-1975

(2024.02.01.) 접수 판매기획처-469

(2024.02.01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 0442013343

전송 0442015530

/ lucidusx2@molit.go.kr

/ 비공개